의안번호	2218112
의 뢰 인	이상식의원
회 답 일	2026.7.6.
추계번호	26D198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200만원, 2032년 6,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3억 2,300만원(연평균 6,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협의기구 (안 제16조)	62	63	65	66	67	323	65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 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안 제16조)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인 외교부의 한미안보협력 관계관 회의를 참고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라 상대국과 이행정보의 신청, 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이행정보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6조 (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경찰청장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협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X	이행정보시스템의 수집, 관리 대상 정보의 범위, 관계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안 제16조 (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안 제16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외교부의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

○ 외교부는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정도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안보협력 관계관 회의에 참석

- 외교부의 사업예산에는 관계관 회의 이외에 친목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1)]

❑ 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3%	2.1%	2.3%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외교부의 한미안보협력 관계관 회의를 유사사례로 활용하여 제정안에 따라 연간 1회 한미범죄예방협력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외교부의 2026년 예산 기준 한미안보협력 관계관 회의에 편성된 금액은 5,95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200만원, 2032년 6,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3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협의기구	62	63	65	66	67	3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유사사례를 근거로 추계한 결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